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호 2159

제출연월일: 2024. 7. 23.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형량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호 중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제1 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제37조제4항, 제48조제2항·제 10항 또는 제49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제44조 제1항"을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벌칙) 제55조를 위반하여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

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7조제1호, 같은 조 제6호 본문, 제98조제1호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97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u>
1.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	1
항, 제31조제1항·제3항, <u>제37</u>	<u>제37</u>
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3항,	<u> 조제4항</u> , 제48조제2항·제10
<u>제48조제2항·제10항, 제49조</u>	<u>항 또는 제49조제1항 단서</u>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u>제44조제1항</u> 에 따라 영업자	6.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7호
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u>는 제외한다)</u>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98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
	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u>아니한 자</u>

<u>1</u> . ~ <u>4</u> . (생 략)	$\underline{2}$. \sim $\underline{5}$. (현행 제 1 호부터 제 4 호
	까지와 같음)
<u><신 설></u>	제99조(벌칙) 제55조를 위반하여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97조~제99 조(벌칙)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 변경한 경우 미신 고, 영업승계 기한 내 미신고,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 명칭 사용시 부과하는 형량을 하향 조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변	· 호·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97조~제99 조(벌칙)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 조항들을 '형벌의 과태료 전환', '형량 하향 조정'등의 방식으로 합리적 개선하는 것으 로 기술적 비용 발생 추계가 어려움

2. 상세 사유

○ 제97조~제99조(벌칙)에 따라 호객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폐업 미신고, 경미한 변경 사항 미신고, 영업승계 기한 내 미신고,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 명칭 사용시 부과하는 형사처벌 수준을 하향 조정하여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기술적 비용 추계가 어려움

Ⅲ. 부대의견

O 해당 없음.

Ⅳ.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연구관	과장	국장
이은수	홍정미	이강희	우영택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은수	043-719-1525	les9044@korea.kr